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3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성일종·고동진·이종배

장동혁 • 서범수 • 서지영

박덕흠 · 김상욱 · 송석준

주철현 · 김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6.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6호에"를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제1항제6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제2조(정의)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원사업	
<u>6.</u> 제1호부터 <u>제5호까지의</u> 사업	<u>7.</u> <u>제6호까지의</u>	
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		
사업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②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1	
필요한 사업비(<u>제1항제6호에</u>	<u>제1항제2호에</u>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중	
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	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	
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한다)	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	
	하고, 제1항제6호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